

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-807호

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 및 「(해양수산부) 혁신제품 지정 지침」에 따라 “2023년도 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”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05월 26일

해양수산부장관

## 2023년도 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

「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」는 해양수산부 R&D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초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음

### 1. 제도 개요

#### □ 추진근거

-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3조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제1항제5호 사목
- 기획재정부 훈령 제543호 “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”
- 해양수산부 훈령 제2022-663호 “(해양수산부) 혁신제품 지정 지침”

#### □ 주요내용

-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\*을 사업화한 제품 중,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“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”으로 지정

\*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(성공)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

-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“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”은 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’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

## 2. 신청 자격 및 방법

### □ 신청대상

○ (필수요건)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
①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\*

\* 중소기업이 제품을 직접생산하거나 위탁생산한 경우 모두 신청 가능

②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\*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

\*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(60점 이상) 통보를 받은 기술

※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, 또는 대학·출연(연) 등으로부터 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

### □ 신청대상 제품

○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·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·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

○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(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)을 개선·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·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·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

### □ 신청 및 접수

○ (공고기간) '23. 5. 26.(금) ~ '23. 6. 30.(금) 15:00 까지

○ (접수기간) '23. 6. 26.(월) ~ '23. 6. 30.(금) 15:00 까지

○ (신청방법) ①나라장터(www.g2b.go.kr)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\* 완료 확인  
→ ②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 (<http://tech.kimst.re.kr>) 전산 접수

\*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 등록,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(조달청 고시)」 제13조, 제22조 및 제23조 참고

구분	나라장터 등록(조달업체/식별번호) 안내
등록방법	○ www.g2b.go.kr → 조달업체로 등록 → 로그인 → 물품식별번호 등록
등록 매뉴얼	○ (조달업체 등록 관련) 화면 우측 최상단 'e-고객센터' → 사용자설명서 → '나라장터 이용 및 등록가이드-조달업체' (115번 게시글) ○ (물품식별번호 관련) 화면 우측 최상단 'e-고객센터' → 사용자설명서 → '나라장터 이용 및 등록가이드-물품식별번호' (122번 게시글)
문의처	○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관련 문의 : (국번없이)1588-0800

**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 전산접수 방법 안내**

http://tech.kimst.re.kr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혁신제품지정 신청접수(혁신제품 → 신청접수) → 내용입력 및 제출서류 등록 → 신청하기 클릭(접수완료)

\* 문의: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성과확산실 기술인증평가팀 (02-3460-0394)

**신청서류**

- (제출방법)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(<http://tech.kimst.re.kr>) 신청 시 자료 업로드

No	제출서류	서식	구분
①	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의 혁신성 평가 신청서	별첨 1	필수
②	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	별첨 2	필수
③	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(성공) 확인 증빙자료 (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화한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)	-	필수
④	제품 규격서(자기점검표,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기관작성란 포함)	별첨 3	필수
⑤	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(인증, 허가의 획득, 신고, 검사의 통과, 관련 서류의 제출 등) 이행 증빙자료	별첨 4	필요시
⑥	지식재산권, 실시권 증빙, 한국인정기구(KOLAS)에서 인정한 공인 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평가를 위한 보완자료	-	필요시

**심사 수수료**

-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평가 소요비용은 정부지원으로 전액 무료

### 3. 추진 및 평가절차

※ 혁신제품 관련 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지정 절차 등은 변동·조정될 수 있음

#### □ 제도 추진절차

주요내용	담당기관	세부내용
제품등록	신청기업	·신청대상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물품으로 등록 ※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」제 13조, 제22조 및 제23조 참고
↓		
신청	신청기업	·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에서 전산접수
↓		
제품 평가·심사	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	·신청서류 검토 ·조달적합성 검토(조달청 별도진행) ·기술혁신성 평가(현장평가, 서류평가)
↓		
심의예정공고	해양수산부	·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심의예정 공고
↓		
조달정책심의위 심의·의결	기획재정부	·조달정책심의위원회(공공수요발굴위원회)에서 혁신제품 지정여부 심의·의결
↓		
지정 및 인증서 발급	해양수산부	·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발급(해양수산부 → 신청기관) ·조달청에 지정정보 통보(해양수산부 → 조달청)

#### □ 평가절차

서류검토	조달적합성검토	현장평가	서류평가
KIMST	조달청	KIMST	KIMST

- ① (서류검토)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하고,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요청
- ② (조달적합성 검토) 신청기업의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여부 및 신청제품의 제조물품 등록 여부 확인

※ 조달적합성 검토 후 부적합 시 접수 반려

- ③ **(현장평가)** 신청제품의 제조현장에서 제품과 성능 확인, 연구개발 기술의 적용 여부, 제품생산을 위한 사업화 기반 등을 평가
- ④ **(서류평가)** 신청제품의 기술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통한 기술의 혁신성을 평가하며, 신청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설명 및 질의응답 진행
  - **종합평가점수\* 70점 이상인** 제품을 기술의 혁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
  - \* (종합평가점수) 개별 평가위원 점수의 최고,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
- ⑤ **(혁신제품 지정 심의) 조달정책심의위원회**(또는 공공수요 발굴위원회, 소관부처 : 기재부·조달청)를 통해 **혁신제품 지정 최종 심의·의결**

## 4. 평가기준

구분	평가기준
현장평가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b>제품의 확인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신청자가 신청 제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</li> </ul> </li> <li>2. <b>연구개발기술 적용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신청 제품에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요소기술의 적용 여부</li> </ul> </li> <li>3. <b>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신청자가 제품 설명서에 기술한대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</li> </ul> </li> <li>4. <b>제품의 성능 확인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신청제품이 설명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은 성능 및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확인</li> </ul> </li> <li>5. <b>기타 확인사항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신청제품 관련 증빙서류 보유현황 확인</li> </ul> </li> </ol>
서류평가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b>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(40)</b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<b>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(10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품인지 여부</li> <li>* 내외국인 생활편의 향상, 국민 생명·안전 보호, 기관 경영 효율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 등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나. <b>공공구매 필요성 (10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신기술 적용제품·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</li> <li>*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인지 여부</li> <li>*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 제품에 해당하여 공공에서 초기 구매가 필요한지 여부</li> </ul> </li> <li>다. <b>현안의 시급성 (10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</li> <li>*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, 국민적 수요, 공론화 정도</li> <li>* 해당 문제로 인한 기관의 경영상 손실과 시급성 정도</li> </ul> </li> <li>라. <b>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(10)</b></li> </ol> </li> </ol>

구분	평 가 기 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신기술 적용제품·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</li> <li>* 국민생활 향상, 사회 안전 해결, 공공경영 개선 기여도</li> <li>* 사회적 리스크 감소와 경제적 효용 향상 기여도</li> </ul> <p><b>2. 시장성(20)</b></p> <p><b>가. 기대 시장규모 (10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</li> <li>* 신기술 적용 제품·서비스를 통한 시장 창출 가능성 및 규모</li> <li>○ 기존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</li> <li>* 신기술 적용 제품·서비스를 통한 혁신으로 기존시장에서 새롭게 차지할 시장점유율 및 규모</li> </ul> <p><b>나. 타 산업 파급성 (10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공구매 확장성</li> <li>* 타 공공부문의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(국내/국외)</li> <li>○ 적용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·발전 가능성</li> <li>* 관련 산업 및 시장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인지</li> <li>* 국내 민간 유사분야 또는 타 분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</li> </ul> <p><b>3. 혁신성 (40)</b></p> <p><b>가. 기술·제품의 신규성 (15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,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,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</li> <li>*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기술 또는 유사한 관련 기술의 수</li> <li>* 품질, 사용의 편의성, 가격프리미엄 등</li> </ul> <p><b>나. 기술·제품의 탁월성 (15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·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 기술이 적용되었는지</li> </ul> <p><b>다.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(10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존 확보 보유기술의 완성도</li> <li>○ 신기술 적용제품·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</li> </ul>

## 5. 문의

담당기관(부서)	문의사항	문의처
<b>해양수산부</b> (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)	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	<b>044-200-6222</b>
<b>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</b> (성과확산실 인증평가팀)	신청·접수, 신청서 작성, 평가일정 등	<b>02-3460-0394</b>
<b>조달청</b>	조달업체 등록, 물품식별번호 발급 등	정부조달 콜센터 (국번없이) <b>1588-0800</b>

[별첨]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 첨부서류